

2026. 9.



제393회 경기도의회
경제노동위원회
투자협약 건 보고



경기경제자유구역청

목 차

1. (사전) 경기경제청 시흥 배곧지구 종근당 투자협약 2
2. (사전)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 삼성전자 투자협약 7

▶ 시흥 배곧지구 의료·바이오 클러스터 입지 강화 및 경기 K-바이오밸리 완성

□ 협약개요

- 일시/장소: 2026. 9. 16.(수) 14:00 / 종근당 본사 회의실
- 협약기관: 경기경제청 ↔ (주)종근당
- 협약내용
 - “경기경제청”은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컨설팅 및 행정지원, 각종 애로 사항 청취 및 개선 등 적극지원
 - “협약기업”은 시흥 배곧지구 투자 및 복합 캠퍼스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및 친환경적인 시설 운영 관리
- 협약서 : 붙임 참조
- 도 재정부담 : 해당없음

□ 협약 의의

- 국가첨단전략산업 「인천-경기 시흥 바이오특화단지」 활성화 및 바이오 선도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경기 K-바이오밸리 완성
- 수도권 대규모 바이오 의약품 복합 캠퍼스 조성으로 경기 서부 바이오 중심의 “국가 新 성장 산업벨트” 구축

□ 향후계획

- ‘26.10월 : 바이오의약품 복합 캠퍼스 기공식 준비 등

경기경제자유구역청	투자유치과장	투자유치팀장
	이 문 교 8008-8627	남 준 수 8008-8632

□ 투자개요

- ▶ 위 치 : 시흥 배곧지구(연구3-1) ▶ 투자면적 : 24,000평
- ▶ 투자금액 : 약 2조2천억원 ▶ 고용인원 : 400명
- ▶ 투자시기 : '26년 상반기 ▶ 생산품목 : 바이오 의약품(뇌혈관질환, 고혈압 등)
- ▶ 협약 의미
 -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상호간의 협력의지 공식화 및 성공적인 투자이행을 위한 발판 마련
 - 전담 창구 지원으로 각종 행정지원 컨설팅 및 인허가 신속 지원 등

□ 추진경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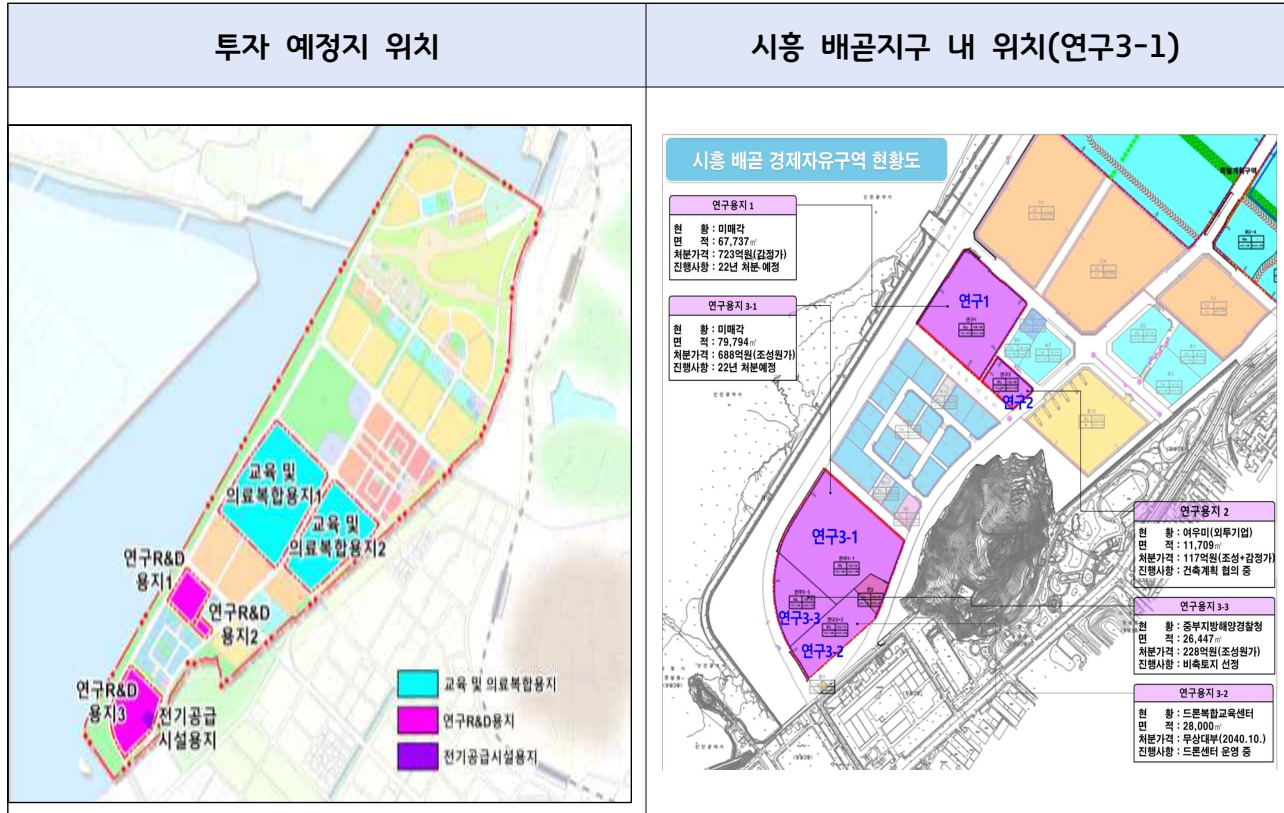
- '25. 4월 사업계획서 검토 → 산업집적법 공장신설 제한 규정 저촉
- '25. 5월 지식산업센터 신설 검토 →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신설은 허용
 - ※ 신설된 지식산업센터 내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은 1,000㎡ 이내만 가능하고,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류코드로 변경하도록 안내
- '26. 3월 첨단업종 산업분류코드로 변경되고 중소·외투기업에 임대하는 계획인 지식산업센터(공장) 신설 검토 → 신설 가능
 - ※ 첨단업종 산업분류코드 변경 : (前) 21101, 21211, 21212 → (後) 21100, 21211

≤그간 주요쟁점 해소≥

- ▶ (쟁점 1) 공장 신설을 위한 건축물 건축 가능 여부
 - ⇒ 도시형공장 유치 위한 지식산업센터 신설 가능(산집법 시행령 제26조제2호나목)
- ▶ (쟁점 2)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신설 가능 여부
 - ⇒ 첨단업종 산업분류코드로 변경되고, 중소·외투기업에 임대할 경우 면적제한 없이 공장 신설 허용(령 제26조제1호 별표1의2,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5)

- '26. 4~5월 조속한 사전절차(교통영향평가, 건축위원회, 지식산업센터 승인) 이행, 개발행위허가, 건축허가 및 착공 방안 제언
 - ① 행정경험을 토대로 전체적 사업추진 방향(공기단축, 절차이행, 협의방법 등) 제시
 - ② 사전절차, 건축허가신청 절차 등을 순차적 단계별 이행 지양하고 동시 다발적 병행 추진
 - ③ 지반 Pile공사가 포함된 연약지반개량 목적의 개발행위 준공 후 연이어 건축물 착공(기일단축)
 - ④ 경자청 제도개선을 통해 '교통영향평가, 건축위원회' 통합 심의(약 4~6개월 단축)
- '26. 6. 17. 연약지반 개량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수리
 - ※ 신청면적 : 20,786㎡(대지면적 : 79,790.8㎡) / 말뚝공사(8,385개) / 포장(11,920㎡)
- '26. 7. 16. 지식산업센터(준공 : '28. 8월 예정) 신설승인 신청
 - ※ 건축면적 14,512.1㎡ / 연면적 74,657.2㎡ / 규모 : 지상 8층
- '26. 6~7월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 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 수시 진행함

□ 위치도(배곧지구 연구3-1)



투 자 양 해 각 서

MEMORANDUM OF UNDERSTANDING

경기경제자유구역청(이하, 청)과 (주)종근당(이하, 협약기업)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에 투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시흥 배곧지구 연구부지3-1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투자내용) “협약기업”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에 다음과 같이 투자한다.

- ① 투자규모 : 약 2조2천억원, 토지 약24,000평
- ② 투자내용 :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 캠퍼스 조성
- ③ 투자시기 : 2026년 상반기 ~ 2033년

제3조(협력내용)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.

- ① “청”은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·허가 컨설팅 및 행정지원, 각종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.
- ② “협약기업”은 시흥 배곧지구 투자 및 복합 캠퍼스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, 친환경적인 시설 운영·관리를 위해 노력한다.

제4조(양도금지)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으로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제5조(협의조정) 이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6조(효력)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고, 향후 당사자 일방이 포기 의향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.

② 이 협약은 비밀유지 의무 이외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7조(비밀유지)

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 이후에도 본 협약서 (또는 협약의 내용)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·제공하거나 본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노력한다.

1. 공지의 사실 또는 본 협약의 당사자로부터 직,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
2. 사법기관,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

제8조(해석)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.

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 보관한다.

2026년 9월 16일



경기경제자유구역청

청 장 김 능 식



종 근 당

대표이사 김 영 주

- ▶ 당초, 기업에서 투자협약 체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, 경기경제청의 적극적 행정 지원*과 요청**으로 행사 추진 합의

* 인허가 및 공사 현장 민원 해결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

** 협약 체결 홍보를 통한 경기경제청 인지도 제고 및 입주기업 결속력 강화

□ 개 요

- 일시/장소 : '26. 9. 29(화), 10:30~ /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
- 협약기관 : 경기경제자유구역청 ↔ 평택시 ↔ 삼성전자
- 협약내용
 - “경기경제청”과 “평택시”는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, 애로사항 청취 및 불편사항 해소창구 마련 등 노력
 - “기업”은 탄소 저감을 위한 시설 건립과 친환경 시설 운영을 노력하고, 지역 내 인력 우선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- 협약서 : ‘붙임’ 참조
- 道 재정부담 : 해당없음

□ 협약 의의

- 평택 포승(BIX)지구 내 첨단자동화 물류거점센터 투자유치로 지역 내 고부가 일자리 창출
- 삼성전자 가전제품 물류 거점센터 유치로 평택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

□ 향후계획

- 물류센터 준공 : '27년 상반기

경기경제자유구역청	투자유치과장	투자유치팀장
	이 문 교 8008-8627	남 준 수 8008-8632

□ 투자개요

- ▶ 위 치 : 평택 포승(BIX)지구(물류2-)
- ▶ 투자금액 : 5,000억원
- ▶ 투자시기 : '23년 2월 토지매입 【착공 ('25년 상반기) → 준공 ('27년 6월)】
- ▶ 투자내용 : 삼성전자 가전제품 첨단자동화 물류거점센터 조성
- ▶ 협약의미 : 평택 포승(BIX)지구 첨단물류센터 거점 조성에 따른 고부가 일자리 및 평택항 물동량 창출
- ▶ 투자면적 : 약33,830평
- ▶ 고용인원 : 약300명

□ 추진경과

- '22.11.25. : 최초 투자상담 이후 상담 지속
- '23.02.14. : 토지매입
- '24.10.14. :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
- '24. 4월~ : 착공 인허가 지원 ※ 건축허가 ('24.12.24)
- '25.04.09. : 착공
- '25.하반기~ 최근 : 투자협약 체결 세레머니 추진 합의

□ 투자위치 (평택 포승(BIX)지구 물류2)



투 자 양 해 각 서

MEMORANDUM OF UNDERSTANDING

경기경제자유구역청(이하, “청”)과 삼성전자 주식회사(이하, “협약기업”)와 평택시(이하, “시”)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(BIX)지구 내에 투자를 결정하고,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평택 포승(BIX)지구 물류시설용지 투자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투자내용) “협약기업”이 평택 포승(BIX)지구에 투자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투자규모 : 약 5,000억원, 토지 33,830평
- ② 투자내용 : CDC물류센터
- ③ 투자시기 : 2025년 ~ 2027년

제3조(협력내용)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.

- ① “청”과 “시”는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, 애로사항 청취 및 불편사항 해소창구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다.
- ② “협약기업”은 평택 포승(BIX)지구 내 탄소 저감을 위한 시설 건립과 친환경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, 지역 내 인력을 우선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.

제4조(양도금지)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으로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제5조(변경) 협약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효력)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고, 향후 당사자 일방이 포기 의향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.

②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7조(해석)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 하여 결정한다.

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9월 29일



경기경제자유구역청

청장 김 능 식

(서명)

SAMSUNG

삼성전자주식회사

부사장 박 순 철

(서명)



평택시

시장 최 원 용

(서명)
